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6.03.01.

개정 2007.09.01. 개정 2009.03.01. 개정 2010.09.01. 개정 2010.11.01. 개정 2013.03.01.

개정 2013.09.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3.01. 개정 2016.12.01. 개정 2018.02.01.

개정 2020.09.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라 한다)의 학사와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2조 (학위과정)

의전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 <개정 2015.3.1.>

1. 석사학위 과정
2. 석·박사복합학위 과정

제3조 (정원)

의전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석·박사복합학위 과정의 입학정원은 입학 정원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5.3.1.>

제3장 입학

제4조 (입학일)

의전원의 입학일은 3월 1일로부터 30일 전·후로 한다. <개정 2015.3.1., 2018.2.1.>

제5조 (지원자격)

- ① 의전원 입학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외국의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지원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공인시험(의치학교육입문검사, MDEET) 응시결과 <개정 2016.12.1.>
 - 2.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제6조 (지원절차)

- ①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 ② 지원시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제7조 (전형방법)

- ① 입학전형은 의전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
- ② <삭제 2009.3.1.>
- ③ 최종합격자는 의전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5.3.1., 2016.12.1.>

제8조 (입학허가 및 취소)

- ① 최종합격자가 의전원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9조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6.12.1.>
- ② 제5조의 지원자격이나 제1항의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이 된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제4장 등록·등록금·장학금

제9조 (등록)

-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제10조 (장학금)

- ① 의전원의 발전과 재학 중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 2015.3.1.>
- ② 장학금의 지급기준, 절차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1.>

제11조 (등록금) <삭제 2014.3.1.>

제5장 수료과정·휴학·제적 등

제12조 (과정)

-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여야 한다.
 - 1. 의학이론 과정 : 2년
 - 2. 임상실습 과정 : 2년
- ② 석·박사복합학위 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여야 한다.
 - 1. 의학이론 과정 : 2년
 - 2. 의과학 연구과정 : 2년 이상
 - 3. 임상실습 과정 : 2년
- ③ 의학이론 과정과 임상실습 과정을 합쳐서 ‘의학 과정’이라 통칭한다.

제13조 (수료)

- ① 학년·학기 수료를 위해서는 학년·학기의 등록을 마치고 당해 학년·학기에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한 학년 또는 학기수에 의거하여 본 의전원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다. <개정 2015.3.1.>

제14조 (의사국가고시 응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사국가고시의 응시자격은 의학 과정을 모두 수료하거나 수료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6.12.1.>

제15조 (재적연한)

- ① 재적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 과정: 7년
 - 2. 석·박사복합학위 과정: 12년
- ② 다음 각 호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재적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군복무에 따른 휴학
 - 2.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

제16조 (휴학)

-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복무 휴학으로 구분한다.
- ② 휴학은 학사일정의 개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휴학은 학기 또는 학년을 단위로 한다.
- ④ 의학 과정에서 휴학한 경우, 휴학의 사유가 소멸되었더라도,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복학할 수 있는 학년·학기 이전까지는 당연 휴학하여야 한다.
- ⑤ 휴학은 제15조 제1항의 재적연한 내에서 할 수 있다.

- ⑥ 기타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복학)

- ① 의학 과정에서 휴학한 경우, 복학을 할 수 있는 학년·학기는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직후의 휴학한 학년·학기로 한다.
- ②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복학원(입대휴학자는 제대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을 의전원에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복학이 완료된다.
<개정 2016.12.1.>

제18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서를 의전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1.>

제19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재적 연한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2. 동일학년에서 2회 이상 유급한 자
3.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고 제17조에서 정한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자
4. 무단으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질병 기타 이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의학 과정

제20조 (학년, 학기)

- ① 의학 과정의 4년은 순서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한다.
- ② 각 학년은 2개 학기로 구분하되, 임상실습 과정은 학기구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각 학년의 개강일은 3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6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8.2.1.>
- ④ <삭제 2016.12.1.>
- ⑤ <삭제 2016.12.1.>

제21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③ <삭제 2016.12.1.>

④ <삭제 2016.12.1.>

제21조의 2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법정휴일,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하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학년마다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업 및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22조 (교과목)

① 교과목은 교양·전공, 필수(핵심)·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목의 학점은 강의는 16시간, 실험·실습은 32시간, 스케줄에 의한 주(週)단위 임상실습은 1주를 1학점으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년·학기별로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년에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0.9.1.>

④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의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③ 유급된 자는 유급 학년의 전공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2호의 사유로 유급된 자는 과락 전공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며, 이외 다른 교과목도 수강 또는 재수강 할 수 있다.

제24조 (출석인정)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험)

① 시험은 과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필기, 실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②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성적)

- ① 제25조에 의한 시험 점수와 출석,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성적은 최종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을 정한다.

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
90- 94	A^0	4.0
85- 89	B^+	3.5
80- 84	B^0	3.0
75- 79	C^+	2.5
70- 74	C^0	2.0
65- 69	D^+	1.5
60- 64	D^0	1.0
0- 59	F	0

- ② 개설된 과목이 이수(P)와 낙제(F)로 평가하기로 한 과목에 대하여는 P 또는 F의 등급을 주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학기 중에 휴학·자퇴·제적한 자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성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D^0 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28조 (학사경고)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30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유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년을 유급 조치할 수 있다.

1. 매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2. 전공필수 과목에서 과락(F)이 있는 자
3. 제28조에 의하여 누적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석일수가 학기의 3분의 2 미만인 자

제7장 의과학 연구과정

제30조 (학기)

- ① 의과학 연구과정은 학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학기 단위로 등록한다.

- ② 각 학기의 개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일은 6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 ③ <삭제 2016.12.1.>

제31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 ③ <삭제 2016.12.1.>
- ④ <삭제 2016.12.1.>

제31조의 2 (휴업일)

- ① 정기휴업일은 법정휴일,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하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학년마다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업 및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2.1.]

제32조 (교과목)

- ① 교과목은 공통·전공과 선택·필수 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과목의 학점은 16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매학기 신청 가능한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며, 수강할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전공별로 선택하여야 할 교과목은 의전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 <개정 2015.3.1.>

제33조 (성적 등)

시험과 성적, 학사경고 등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28조를 적용한다.

제34조 (교육과정)

- ① <삭제>2009.03.01
- ② 의학 과정의 임상이론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의과학 연구과정에 등록하기에 앞서, 전공과 지도교수를 정하고 이를 의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 ③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4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 중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 ⑤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의전원에서 정한 기간에 지도교수가 승인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 ⑥ 대학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연구지도 과목을 2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연구지도 과목을 2학기 이상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자

제35조 (임상실습 과정 등록)

의과학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임상실습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36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은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매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과목은 전공 2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한다.
- ③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각 과목이 7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하며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응시과목 중 합격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시하는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서 과목을 선정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 ⑤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시간과 문항, 응시료 등의 세부사항은 의전원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1.>

제37조 (학위논문 양식)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양식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

제38조 (심사위원)

- ① 학기 중에 학위논문심사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 전공주임교수는 의전원장에게 5인 이상을 추천하여 의전원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3.1., 2016.12.1.>
- ② 심사위원은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교수로 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이 경우 2인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 ③ 의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 ④ 의전원장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인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 및 구술시험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의결권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5.3.1.>

제39조 (학위 논문심사)

- ① 심사위원회의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②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심사 이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의전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 ③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을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서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 실시일 1주 전까지 의전원과 각 심사위원에게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 ④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한다. <개정 2016.12.1.>
- ⑤ 본 심사는 의전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써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개정 2015.3.1.>

제40조 (구술심사)

본심사에 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구술심사를 행한다. <개정 2016.12.1.>

제41조 (심사의결)

논문심사와 구술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

제42조 (재심사)

- ①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두심사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한하여 구두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 판정은 취소된다.

제43조 (공개발표)

의전원장은 본심사 이전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논문제출자에게 공개발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발표 1주일 이전에 논문의 초록을 의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2016.12.1.>

제44조 (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6 부(심사위원 날인 본 1부 포함)를 기일 내에 의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2016.12.1.>

제8장 학위수여

제45조 (학위수여자격)

- ① 석사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정의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
 2. 이수 학점이 170학점 이상 <개정 2016.12.1., 2020.9.1.>
 3. 모든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0 이상 <개정 2016.12.1.>
 4. <삭제 2016.12.1.>
 5. 선택 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0.9.1.>
- ② 석·박사복합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정의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
 2. 이수 학점이 의학 과정에서 170학점 이상,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34학점 이상 <개정 2016.12.1., 2020.9.1.>
 3.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
 4.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논문을 작성·제출하여 심사에 합격
 5.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의 합격 <개정 2016.12.1.>
 6. SCI급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의 원저를 제 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서 게재하였거나 또는 게재 예정
 7. 선택 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0.9.1.>
- ③ 제2항 제5호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전원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3.1., 2016.12.1.>
- ④ 석·박사복합학위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 (학위종별)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 (학위수여)

학위는 의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매년 2월의 졸업식에 행한다. <개정 2015.3.1.>

제47조의2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1.>

제9장 포상·징계

제48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

-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업 성적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6.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처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조직

제50조 (조직) <변경 2013.9.1>

- ① 의전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의전원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의전원의 교육·인사·행정·재정·입학 등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1.>
- ③ 의전원에는 교무, 학생, 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에 부원장을 보한다. <개정 2016.12.1., 2020.9.1.>
- ④ 의전원에는 입학, 재정, 정보화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보하고,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장을 졸업후 교육 담당관으로 보한다.
- ⑤ 의전원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의 교실을 두고 교원의 전공에 따라 소속을 발령하고, 교실별로 주임교수를 보한다.
- ⑥ 의전원의 행정과 수업·연구 보조를 위하여 행정부서와 교실에 직원, 조교, 상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⑦ 의전원장 선임, 의전원장의 임무와 권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의전원에 설치하는 조직과 보직자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부설기관 및 연구소) <변경 2013.9.1>

- ① 의전원에는 의학도서관, 임상시뮬레이션센터, 학생상담센터, 보건실 등의 부속기관을 두고 관장, 센터장, 실장 등을 보한다. <개정 2016.12.1.>
- ② 의전원에는 의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두고 소장을 보한다.
- ③ 부설기관 및 연구소에는 필요한 직원 또는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④ 부설기관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위원회) <변경 2013.9.1>

- ① 의전원에는 인사,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보 칙

제53조 (위임) <변경 2013.9.1>

- ① 의과학 연구과정에서의 교과운영 및 제 시험, 논문 심사, 교학업무 지원 등에 대하여는 전공분야에 따라 본교 대학원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의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1.>

부 칙

- 1.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제1항 2호 및 5호, 제2항 2호 및 7호는 2020학년도 1학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전원 입학정원

과 정	입학정원
석사학위 과정	40

[별표 2] 의전원 학위종별

학위과정	학위
석사학위 과정	의무석사(M.D.)
석 · 박사복합학위 과정	의과학박사(M.D.-Ph.D.) 이학박사(Ph.D. in Science)